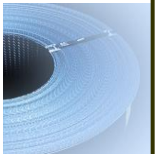


2007.6.18

POSRI CEO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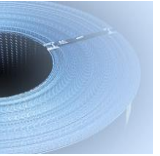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과 시사점



경영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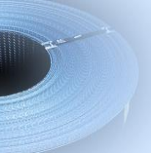
양대천 연구위원

Executive Summary



〈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과 시사점 〉

- 주요 OECD 국가들은 자국의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를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규제
 - 미국은 Exon-Florio법에 의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업종이나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심의기관이 막대한 사전·사후 재량권을 가지고 계약변경, 거래포기 등을 유도
 - 영국, 프랑스 등도 국가안보·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저지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증권거래법 등에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규제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고 경직적
- 따라서 관련법 개정 또는 신규 입법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사후에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탄력적 규정이 필요



목 차

I. 서론	1
II.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과 사례	2
1. 미국	2
2. 기타 주요 선진 국가	5
III. 한국의 외국인 M&A 규제 법안과 한계	7
1. 외국인투자촉진법	7
2. 증권거래법	7
3. 개별법	8
4. 국내 관련법안의 한계	8
IV. 국내 관련법안의 개편방향	9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추진	9
2. 공공적 법인제도의 개정추진	10
3. 美 Exon-Florio규정 도입	11

I. 서론

- ‘소버린’의 SK(주)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종결 6개월 만에 ‘칼아이 칸’이 KT&G의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국내 우량기업들은 적대적 M&A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음을 인식
- 국내 우량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지분이 높고 대주주지분이 취약해 적대적 M&A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더구나 대부분의 우량기업들은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매력적인 대상
- 국내 우량기업들도 전략적 상호지분교환, 자사주 취득 등 우호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의 과도한 투입과 출혈이 불가피한 실정
- 설사 우호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더라도 국제 거대자본들은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략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경영권 위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 실제로 한국기업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
- 국내 우량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보다 적대적 M&A방어에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면, 기업은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 저해되고 우리경제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 국가들은 적대적 M&A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어책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자본으로부터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면서도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제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대적 M&A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열악함. 그나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간산업 인수를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에는 규제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이고 경직적
-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주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의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검토

II.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과 사례

1. 미국

☞ **Exon-Florio법**^{주1)}은 포괄법으로 특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적용이 광범위함. 또한 심사기관의 사전·사후적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심사기관의 조사결정만으로도 효과를 발휘

주1) 미국의 외국인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연방법차원에서 Exon-Florio법과 연방통신법 등 기타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주법으로도 각 주마다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음

(1) Exon-Florio법 개요

□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의 미국기업 인수 붐을 겪으면서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주2)}과 외국인투자 규제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이 증대됨. 이로 인해 1988년 미국은 외국인으로부터 자국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한 **Exon-Florio법**을 제정

- 연방법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업종이나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외국인 M&A 규제가 가능
- 美 대통령 산하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에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M&A를 조사할 권한 및 M&A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 국방부나 안보관련 제품공급 업체, 수출 및 기술이전이 금지된 제품을 보유하는 업체에 국한됐던 적용 대상이 9.11사태 이후 통신, 전자, 에너지 등의 기간사업들로 확대

주2) 특히, 1986년 일본 Fujitsu사에 의한 미국 Fairchild반도체 회사 인수 사건을 계기로 미국사회의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보임.

(2) Exon-Florio법 적용절차

【Exon-Florio의 집행절차】

자발적 통지	30일간의 검토	조사	대통령의 결정
합병 혹은 인수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회사는 CFIUS에 자발적으로 통지	CFIUS는 외국인에 의한 기업인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신뢰성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	CFIUS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실시,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사항 보고	대통령은 CFIUS의 권고사항을 보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용여부를 결정

- 외국인이 미국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 미국정부의 재무부 산하의 CFIUS에 자발적으로 통지하고, CFIUS는 Exon-Florio법에 의거해 검토, 조사 및 인수·합병 승인여부를 판단
 - 외국인이 미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통상 자발적인 통지(심사의뢰)를 요구하고 있으나, CFIUS는 직권으로 검토 개시가 가능
 - CFIUS는 30일간의 검토를 통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를 감소시키는 여러 대안적 조치를 강구
 - CFIUS는 조사과정을 통해서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인수인에게 통지하는데, 대통령 결정이 내리기 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

(3) Exon-Florio법 적용 통제

- 외국인이 미국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많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통지
 - 인수자가 반드시 사전에 CFIUS에 심사의뢰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CFIUS가 승인을 불허한다면 피해가 크므로, 인수자는 불필요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자발적으로 통지
- Exon-Florio 규정에 따른 금지사례는 많지 않으나, 실제로는 인수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포기하거나, CFIUS의 권고내용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인수가 허용
 - CFIUS가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인수자는 자발적으로 거래를 포기(조사대상의 47.8%)
 - 인수를 추진하더라도 CFIUS와 협의과정에서 권고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수구조를 재구성

【외국인 투자 심사 및 철회 건수 ('88~'04)】

외국인 인수	심사의뢰 / 검토	조사	자발적 철회	불승인
7,371건	1524건 (전 단계의 20.6%)	23건 (전 단계의 1.5%)	11건 (전 단계의 47.8%)	1건 ^{주3)}

자료: The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주3) 중국항공기술수출입공사(CATIC)의 美 MAMCO사에 대한 인수시도건 ('89~'90년)

(4) Exon-Florio법 적용 사례

日NTT사의 美Verio사 인수('00年)

- NTT사가 Verio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FBI가 계속적으로 Verio사의 통신망에서 도청과 정기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CFIUS는 거래를 승인
 - NTT사는 일본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인데, 이처럼 외국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CFIUS의 의무적인 조사가 필요함. Verio사는 미국 내 기간통신망 회사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어 승인이 필요
 - CFIUS는 FBI가 계속적으로 Verio사의 통신망에서 법원의 영장을 가진 도청과 정기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

홍콩HPH사의 美GlobalCrossing사 인수시도('03年)

- 홍콩HPH(Hutchison Port Holdings)사가 중국정부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CFIUS는 45일간의 조사를 결정하였고, HPH사는 조사개시결정만으로도 인수를 취하
 - 美GlobalCrossing사는 광섬유망(Fiber-optics network)의 소유권을 가진 통신회사인데, 동 소유권이 국외(중국)로 넘어가면 미국정부가 해외에서 도청이 되거나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지적
 - 홍콩HPH사는 인수 후에도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겠다고 CFIUS에 제안했으나, CFIUS는 이를 거부하고 45일간의 조사를 개시할 것을 결정
 - HPH사는 CFIUS의 조사개시결정이 인수승인거절이라고 판단하여 인수를 백지화

中CNOOC사(중국해양석유공사)의 美Unocal사 인수시도('05年)

- 미국 석유회사인 Unocal사를 中CNOOC사가 인수하는 경우 국가안전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미국하원의회의 결의 후 미국정부가 인수심의를 보류하고 CNOOC사는 인수포기
 - 中CNOOC사는 美Unocal사 매각을 위한 협상대상자 중의 하나로 인수전에 참여하여, 美Shevron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
 - 미국하원의회의는 미국의 국가안전에 위해가 될 것으로 예상해 국가안보심사가 필요하다는 비구속적 결의^{주4)}함. 그러나 미국정부의 인수심의보류결정이 이어지면서 결국 CNOOC사는 인수포기를 발표

주4) '06년에 두 개의 관련 연방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안보심사에 의회의 관여가 강화됨

英BTR사의 美Norton사 적대적 인수시도('90年)

- Norton사는 영국BTR사의 적대적 인수시도에 대해 연방의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상원으로 하여금 CFIUS가 조사를 착수하도록 함. 결국 영국BTR사는 인수시도를 포기
 - 美Norton사는 우주왕복선에 쓰이는 세라믹재질의 베어링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영국 부품회사인 BTR사가 Norton사에 대해 적대적 인수시도
 - Norton사는 120명 이상의 하원의원들을 설득하였고, 매사추세츠州 출신의 존 케리 상원의원도 국가안보 외에 Norton사가 州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Exxon-Florio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 연방의원들의 국가안보심의요청에 따라 CFIUS는 동 적대적 인수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결국 BTR사는 인수시도를 포기

2. 기타 주요 선진 국가

- ☞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외국인 M&A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대부분 사전·사후 심사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투자 철회를 명령
- 영국은 산업법(Industry Act, 1975)에 의해 국익에 반하는 ‘중요한 제조업’에 대해 외국인 인수를 규제하고 있으며, 공정무역법(Fair Trading Act, 1973)에 의해 무역산업부장관이 외국자본이 공공이익에 반할 경우 투자를 막거나 철회를 명령
 - 산업법(Industry Act)에서 ‘중요한 제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안보 · 공공이익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거부가능
 - 공정무역법(Fair Trading Act)에서 ‘공공이익^{주5)}’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무역산업부장관이 독점·합병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후적으로도 기존 투자에 대해 철회명령이 가능
 - 2006년 러시아 최대가스업체인 Gazprom사의 영국 최대 가스공급기업인 Centrica사 인수시도에 대해, 영국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직접 개입하여 규제

주5) ‘공공이익’으로 영국 내 경쟁에 대한 효과, 소비자이익, 신제품개발, 비용절감, 산업과 고용의 균형적 분배 등 매우 포괄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 프랑스는 화폐재정법^{주6)}에 의거하여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승인 없는 투자에 대해 사후적 규제가 가능

- 화폐재정법은 ‘공공기능과 활동’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의 사전승인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는 공공질서, 건강 또는 보건, 공적 기능(연구, 생산, 군사목적 물질이나 장비) 등을 포함
- 정식 승인 없이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에 대해 1992년~ 1996년 사이 9차례에 걸쳐 규제(투자 철회 등)
- 2005년 미국 Pepsi사의 프랑스 Danone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시도에 이어 2006년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el사가 프랑스 Suez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시도가 있었으나, 프랑스 정부가 개입하여 저지^{주7)}
 - 2005년 미국 Pepsi사는 에비앙 생수를 제조하는 세계1위의 요구르트회사인 프랑스 Danone사를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으나, 프랑스 정부가 개입하자 Pepsi사는 인수계획을 철회
 - 2006년 이탈리아의 에너지기업 Enel사가 프랑스 민영에너지 기업인 Suez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으나, 이에 반대한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 국영가스회사(GDF사)와의 합병조치를 명령

주6) 화폐재정법: Financial and Monetary Code

주7) 화폐재정법을 직접 적용한 사례는 아니나, 동 법의 취지에 의해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06년 이후 국방, 철강, 에너지 등 11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어책을 수립중임

□ 캐나다는 외국인투자심사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기업 인수는 사전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

- 외국인투자심사법(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1973)에 의해 외국 자본이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캐나다에 확실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이 필요
- 방송, 항공, 해운, 은행 등 특정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데, 일례로 외국인은 중형은행에 대해 65%까지,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20%이상 지분 취득을 금지^{주8)}

주8) 중형은행은 자본금 10~ 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은 50억 캐나다달러 이상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OECD 국가의 규제내용 요약】

국가	관련 규정
영국	- 산업법에 의거 국익에 반하는 중요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인수를 규제(정부의 황금주 보유 방식) - 공정무역법에 따라 외국자본이 공공이익에 반할 경우 투자를 철회시킬수 있는 권한 보유
프랑스	- 화폐재정법은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사전승인을 요구함 - 정식승인이 없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철회명령도 가능
캐나다	외국인투자심사법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의 직·간접 인수는 사전심사대상이 됨
핀란드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US\$2 억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의 1/3 이상을 취득하거나 직접적인 경영권 통제가 가능한 경우와 기타 국익을 저해하는 경우 사전신고 및 무역산업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호주	외국인인수합병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의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제
일본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안별로 사전적 심사규제 실시

III. 한국의 외국인에 의한 M&A 규제 법안과 한계

☞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의한 M&A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규제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고 경직적

1.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국가안보,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 방위산업체를 지정하고, 외국인투자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실시

➔ 대통령령으로 미리 규제대상인 업종과 제한내용을 정해야 함으로, 법령상의 명시규정이 없이는 사전적 규제가 곤란

2. 증권거래법: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취득의 제한

- 증권거래법에 규정하는 ‘공공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일반적 취득 한도^{주9)} 내에서 법인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외국인 전체 취득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0%로 제한

주9) 총의결권부 발행주식의 3% 이내 (공공적법인 등록당시 10%이상 소유분 제외)

- ‘공공적 법인’은 국가기간산업 중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등록 법인을 의미

- 현재의 ‘공공적 법인’제도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특히, 공기업)를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상장이 되더라도 특정인에게 지분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

➔ 1987년 11월 제도 도입된 이후, POSCO, 한국전력, 국민은행이 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한국전력만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활용이 제한적

3. 개별법: 통신·방송·신문 등 특정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

-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49% 초과 소유 금지
-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외국인 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위성방송사업의 경우 33.3% 초과 출자 금지
-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간신문의 경우 외국인의 30% 이상 지분 소유를 금지

➔ 외국인에 의한 M&A의 제한 범위에 있어 특정 산업에 속하지 못한 국내 다수의 기간산업을 보호하기에는 한계

4. 국내 관련법안의 한계

- 외국인 M&A로부터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산업체, 공공적 법인, 주요 공공산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 산업이 제한적이고, 법 적용이 경직적
 - 보호대상 산업 및 기업을 열거주의에 의해 기술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이 효과적으로 보호 받기 곤란
 - 제한내용과 법 적용이 경직적이어서 외국투기자본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격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하기 곤란
 - 지정된 업체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규제·감독을 받게 되어 경영활동이 위축되거나 주주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할 우려가 존재

IV. 국내 관련법안의 개편방향

- ☞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M&A에 의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의해 사전·사후에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필요
- ☞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공공적 법인제도를 포괄적이고 탄력적 형태로 개정을 추진하거나, 미국의 Exon-Florio법을 차용하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입법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추진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통령령으로 미리 규제대상인 업종과 제한내용을 정하여야 하므로, 법령상의 명시규정이 없이는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법 적용이 경직적

→ 따라서,

- ① 국제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종 및 대상을 포괄적 확대가 필요

- 군사적 방위산업 이외에 통신, 철강, 에너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 생명공학 등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확대하되, 필요시에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적용

- ②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의기관^{주10)}을 별도로 두되, 사안별로 유연하게 심사기준 적용

- 방위산업체 지정 후, 지속적인 규제보다는 적대적 M&A 노출 위험이 클 경우 심의기관에서 재량권을 갖고 사안별로 적정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투자위축을 방지

주10)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존재하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함

공공적 법인제도(증권거래법)의 개정 추진

- 공공적 법인제도(증권거래법)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 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지배권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되어 현재는 한국전력만 지정되어 있고 활용이 제한적
- 또한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주식취득제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따라서

① 공공적 법인을 확대 지정하거나 탄력적 적용이 필요

- 기본적 목적인 국가기간사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종을 확대하거나 심사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포괄규정을 도입

② 주식취득 제한기준을 다원화해서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보호를 고려

- 개별 기업의 사정을 반영하고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체 주식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회사의 정관에서 그 한도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그 소유를 허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취득제한의 범위에서만 재취득 가능케 실시

美 Exon-Florio규정 도입

- 입법 비용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공공적 법인제도의 개정이 효과적이나, 별도 법령을 도입하면 심사대상과 심의기관 설치 및 운영 등 실질적·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
- 별도 법령을 도입하는 경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설계를 하되,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나 WTO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설계

- **Exon-Florio** 규정을 차용하여 입법설계를 함에 있어 ① 보호 개념범위(대상 산업 또는 기업 포함) ② 규제대상 투자 ③ 심의기관 및 심의방법·절차 ④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규정

① 보호개념 범위

- 국가안보, 공공질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OECD의 허용범위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범위를 고려
-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위를 열거하되 산업수준으로 규정하거나, 보호대상 산업과 기업을 특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의 적용차원에서 고려

② 규제대상 투자

- 주요 국가들은 모든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하되 정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직·간접 기업인수를 대상으로 지정
- 외국인 투자 위축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 규제대상 투자를 ‘기업지배권 취득’으로 한정하고 사안별로 정성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③ 심의기관 및 심의방법·절차

- 별도의 외국인투자심의기관을 설치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규정을 적용할 것을 고려

④ 조치사항

- 외국인투자의 신뢰성 있는 위해성이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투자 철회를 결정하거나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및 기타 필요조치 필요

양대천 (Tel 02-3457-8119, e-mail: dcyang@posri.re.kr)